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신성범 · 서천호

이종배 • 주진우 • 김상훈

조경태 • 권성동 • 임종득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 되신 분들과 유족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,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 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,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함. 즉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'본인이나 유족'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상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에 비해, 전사, 순직한 군인 등의 유가족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.

이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

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, 아울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를 마련하려는 취지임(안 제2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·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· 군무원·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족 또는 가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 원이 전투·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·순직하거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,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2조(배상책임)	1 •	② (생	제2조(배상책임) ① · ② (현행
략)		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
			전사・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
			군인・군무원・경찰공무원 또
			는 예비군대원의 유족 또는 가
			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
			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.